

대만 · 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1년 10월)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 <사전공고>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기 사항」 초안 (9.30)

- 공고 일자 : 2021년 9월 30일
- 공문 번호 :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302172호
- 시행 일자 : 2023년 1월 1일 및 일부는 고시 후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제1항 10호

2.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장 표시 내용의 공통 규격

- ① 철분 함량이 100kcal당 1mg 미만인 제품은 「생후 3개월 이상 영유아 섭취 시 철분 보충에 주의 하십시오(三個月以上嬰兒食用時, 應注意補充鐵質)」 또는 유사한 문구를 표기해야 함
- ② 철분 함량이 100kcal당 1mg 이상인 제품은 「철분 첨가 영유아 조제식품(添加鐵質之嬰兒配方食品)」 또는 유사 문구를 표시해야 함
- ③ 제품 개봉 전 후 보관법을 표기해야 함
- ④ 제품 섭취 방법 및 적정 섭취량을 표기해야 함
 - 분말 제품은 동봉된 계량 스푼 기준으로 한 스푼 기준 무게와 조제에 필요한 제품 용량과 물의 양을 표기해야 함
 - 액상 형태 농축 제품은 「섭취 전 물을 넣어 조제해야 함(食用前須加水調製)」 또는 유사 문구를 표기하고 제품과 함께 추가해야 할 적정 물의 양을 표기해야 함
- ⑤ 「조제 또는 희석 시 끓인 따뜻한 물과 멸균된 용기를 사용하십시오(沖泡或稀釋調配時, 應使用經煮沸之溫水及充分消毒之容器)」 또는 유사한 문구를 표기해야 함
- ⑥ 「부적절한 섭취는 영유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調配不當將對嬰兒健康造成危害)」 또는 유사 경고문을 표기해야 함
- ⑦ 액상 제품에는 「개봉 전 병을 흔들어 제품을 고르게 섞은 후 섭취해야 함(開封前須搖動瓶罐待溶液混合均勻後再食用)」 또는 유사한 문구를 표기해야 함
- ⑧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제품 외 보충 식품 섭취가 필요함 (六個月以上之嬰兒食用本產品時應配合添加副食品)」 또는 유사한 문구를 표기해야 함
- ⑨ 「의료진 또는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제품의 섭취 여부와 올바른 섭취 방법을 결정하세요(使用者應遵照醫護人員、營養師之建議決定是否需要食用嬰兒配方食品及食用方法)」 또는 유사 문구를 표기해야 함
- ⑩ ‘영유아 조제식품 식별 표시’ 는 용기와 포장지에 선명하게 인쇄되어야 함
 - 도면 중 「모유 수유한 아기가 가장 건강합니다(餵母乳的嬰兒最健康).」와 「보건복지

부는 당신을 보호합니다(衛生福利部關心您).」 문구가 인쇄되어야 함

- 도면은 CMYK 색상을 사용함 (녹색 Y100C60, 주황색 Y100M60)

- 도면의 크기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되, 3cm× 3cm이상이어야 함



衛生福利部關心您

| 영유아 조제식품 식별표시 도안 |

3. 영유아 조제식품 개별 표시 규정

앞의 사항에 추가하여 영유아 조제식품 분류에 따라 다음 내용을 표기 해야함

① 영아용 조제식품

- 「영아 조제식품(嬰兒配方食品)」이라는 단어
- 모유 수유 장점에 대한 설명
- 수유표(餵哺表)에 아기 체중을 추가

② 유아용 조제 보조식품 : 「유아 조제 보조식품(較大嬰兒配方輔助食品)」이라는 단어

③ 특수 의료용 영아용 조제식품: 해당 대상 및 제품 특성 표기

4.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시 금지 사항

-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장에 「인유화(人乳化)」, 「모유화(母乳化)」 또는 모유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아기의 사진이나 제품을 이상적(理想化)으로 보이게 하는 사진이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됨

5. 영유아 조제식품 표시 내용의 제품검사등록심의 승인 필요 규정

- 두 번째 (영유아 조제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 표시 내용의 공통 규격) 및 세 번째(영유아 연령대 별 조제식품의 개별 표시 규정) 항목은 제품 검사 및 등록 심사 및 승인에 따라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등록 및 허가 문서 관리 조치에 따라 변경 후 승인될 수 있음

6. 규정 미준수 또는 허위, 과장, 오인 표시 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

<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기 사항」 초안(2021.09.30)>

-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기 사항(嬰兒與較大嬰兒配方食品應加標示事項)」 초안 원문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7339>

□ 개정 「중화민국 수입물품 분류표(中華民國輸入規定)」 (10.6)

- 공고 일자 : 2021년 10월 6일
- 시행 일자 : 2021년 11월 1일
- 공문 번호 :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302530호
- 개정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30조 1항
- 주요내용

기존 통합해 관리해오던 “소매용 영유아 분유 및 우유” 를 “소매용 영유아 분유” 와 “소매용 영유아 우유” 로 세분화 하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 3개의 CCC코드를 추가하고 피라니아를 포함한 2개 품목 코드를 삭제하고 대왕조개의 CCC코드를 변경함

<변경된 수입물품 분류표>

	CCC코드	품명	현행 규정	개정 후 규정
1	0301.99.29.48-9	피라니아 (食人魚/Serrasalmus spp., Pygocentrus spp., Pristobrycon spp., Pygopristis spp.)	F01	
2	0307.71.90.21-0	대왕조개 (Giant clams (Tridacnidae.0 spp.), live)	F01	F02
3	1901.10.00.10-4	영유아용 분유·영유아용 우유 (소매 판매용)	F01	
4	1901.10.00.11-3	영유아용 분유 (소매 판매용)		F01
5	1901.10.00.12-2	영유아용 우유 (소매 판매용)		F01
6	3926.90.90.90-8	기타 플라스틱 제품 및 제39.01~39.14 원료의 완제품		F02

* 대만은 중화민국 수입물품 분류표(中華民國輸入貨品分類表)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짐. 대만의 품목별 통관은 수입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기관에 감사를 마친 후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대만 내 시판이 가능함
 - 수입 규정 F01 : ‘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에 수입 검사 신청
 - 수입 규정 F02 : 이에 속한 식품·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식품용 세정제 등은 ‘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 검사방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 <사전공고> 「포장식품 영양 강조 표시 준수 사항」 초안 (10.13)

- 공고 일자 : 2021년 10월 13일
- 공문 번호 : 위수식자(衛授食字)제1101300934호
- 시행 일자 : 2023년 1월 1일 / 일부 고시 직 후 시행 예정
- 법적 근거 :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3항
-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포장식품의 영양 표시에 적용되며, “특수 영양식품(特殊營養食品)” 의 경우 기존 규정과 함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함

2. 용어의 정의

- ① (영양표시(營養宣稱)) 설명, 표 등을 통해 제품에 함유/함유되지 않은 특정 영양소 정보를 표시함

- ② (적당량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需適量攝取之營養素)) 과도한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열량,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설탕, 유당 등
- ③ (보충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可補充攝取之營養素)) 불충분한 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추가 섭취·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철분 등

3.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새로운 수치 표시 규정 추가, 보충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 영양 표시 규정 수정, 생리적 기능을 주장할 수 있는 영양소 함량 기준 추가

- ① (식품 칼로리나 영양소 함량 기록) 영양소 함량 수치는 식품의 단위 중량, 부피 또는 수량으로 영양소 함량을 표기함
- ② (적당량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無)」, 「무함유(不含)」, 「영(零)」, 「낮음(低)」, 「적음(少)」 등 용어 및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③ (보충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음(高)」, 「많음(多)」, 「강화(強化)」, 「풍부함(富含)」 등 용어 및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4. 재수화 또는 희석하여 섭취해야 하는 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개정

- ① 섭취 전에 재수화하거나 희석해야 하는 식품(예: 분유, 과일 음료 분말, 커피 등)은 제품에 명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조제된 것을 기준으로 영양 표시해야함
- ② 조제하여 내용물을 직접 섭취하지 않는 식품(예: 티백 등)은 섭취 방법에 따라 조제한 100ml의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영양 표시해야함
- ③ 영양표시 방식은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표시 기준을 따라야함

5. 식품에 영양 표시 영양소가 2개 이상인 경우 표기 규정 추가

- ‘본 제품은 저지방, 고섬유질 제품임’, ‘본 제품은 고칼슘, 고섬유질, 0콜레스테롤 제품임’ 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영양표시가 있는 식품의 경우 동일한 형태(고체(반고체) 또는 액체)로 측정 기준으로 선택하고 측정기준이 100ml 또는 100kcal인지 표기해야함

<「포장식품 영양 강조 표시 준수 사항」 초안(2021.10.13)>

- 「포장식품 영양 강조 표시 준수 사항 (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초안 원문
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7353

2. 홍콩

□ 러시아 포함 3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10월)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1년9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3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지역	내용	비고
러시아	Respublika Baškortosta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	(‘21.1~6) 對 러시아 냉동가금육 수입량 : 490kg 가금류 알 : 수입 실적 없음
이탈리아	베로나(Veron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1.1~6) 對 이탈리아 냉동가금육 수입량 : 550톤 가금류 알 : 66,000개
에스토니아	타르투 주(Tartu County), 하르유 주(Harju Coun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8)	(‘21.1~6) 對 에스토니아 수입 실적 없음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대만

- 특이 사항 없음

2. 홍콩

□ 8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9.30)

- 2021년 8월, 약 5,70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5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살모넬라(Salmonella) 검출	2건	취계(醉鸡) 1종, 과일 샐러드 1종
이산화황(sulphur dioxide) 초과 검출	1건	새우면 1종
수은(mercury) 법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	1건	건조 포르치니(dried porcini)
카드뮴(cadmium) 법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	1건	사전 포장된 게(crab)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약 1,400개, 화학적 테스트를 위해 약 4,300개 샘플을 수집·시험함
 - 미생물 테스트는 병원균 및 위생지표를 다루며, 화학 테스트에는 잔류 농약, 방부제, 금속 오염, 식용색소,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 등이 있음
 - 8월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샘플의 품목별 수는 채소 및 과일 2,400개, 곡물 및 곡물 제품 300개, 유류·가금류 및 가공제품 600개, 유제품 및 냉동 당과 제품 700개, 수산물 및 가공식품 700개, 음료·베이커리류 및 스낵 1,000개 임

□ 9월 영양 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10.22)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1년 9월, 17개의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없음

○ 알레르겐 표기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및 유제품(락토즈 포함), 콩 및 땅콩, 견과류, 아황산염 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 2021년 9월, 2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알레르겐 표기 위반 사례 1건 발생

일자	제품	문제사유	라벨링 표기	테스트 결과
8월	냉동 카리브해 연안의 닭새우 (Frozen Raw Caribbean Spiny Lobster Tail)	이산화황	표기사항 없음	이산화황 검출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III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대만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1.09.24~ 2021.10.28. 현재 기준)

- 2021년 10월, 한국산 식품(신선)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위반 사례 1건,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규정 위반 사례 2건 있음

분류	발표 일자	제품	원산지	문제 사유	내용	수입 물량	조치 내용
신선	9.28 (접수일 8.27)	신선 메론 (新鮮哈密瓜)	한국	잔류 농약 루페논론 (Lufenlon)초과 검출	허용치: 0.01ppm 검출치: 0.03ppm	75kg	반품 또는 폐기
가공	10.5 (접수일 8.30)	떡볶이 양념장 (年糕醬)	한국	감미료 사카린(糖精) 검출	허용치: 검출 불가 검출치: 0.46g/kg	150kg	반품 또는 폐기
	10.12 (접수일 8.31)	치즈맛 시즈닝 (起士粉)	한국	감미료 스테비올 (菊糖苷) 검출	허용치: 검출 불가 검출치: 0.45g/kg	200kg	반품 또는 폐기

* 출처 : 대만 위생 복리부 식품약물 관리서 (consumer.fda.gov.tw)

□ 홍콩 리콜 사례 (10월) (2021.09.24~ 2021.10.28. 현재 기준)

- 2021년 10월, 한국 농식품 리콜사례 없음

IV

FTA 이행 이슈 관련

○ 해당 없음